

GreenLink

사업장 연동 시 제출 서류

사업장 담당자는 시스템 최초 연동 시, 지자체에 **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완료 신고서**와 **그린링크 전송 확인서**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완료 신고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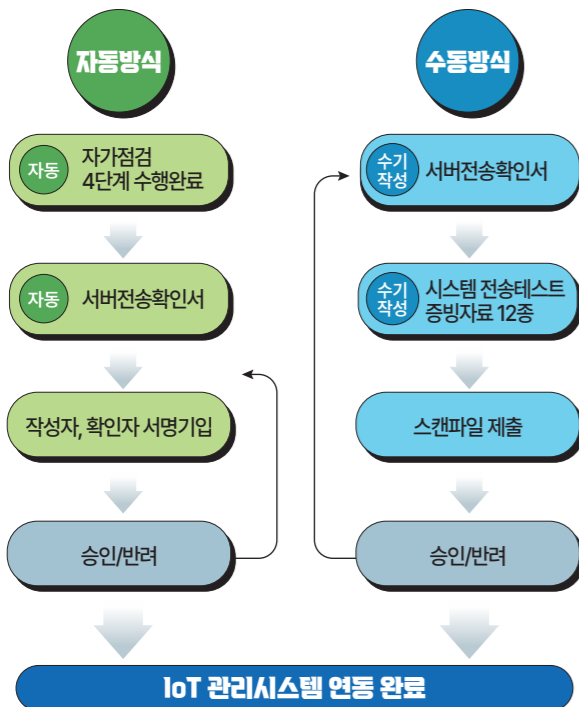
환경부에서 고시한 **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 운영 규정 별지 1** (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완료 통보서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그린링크 전송 확인서

자동방식을 이용하시는 경우, IoT 관리시스템에 작성 가능하며, 수동방식을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**환경부 누리집**에 게시된 **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·운영 가이드라인 서식1(26~31p)**을 참고 하시거나 **그린링크 누리집 로그인 창 하단**에서 **작성 양식**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.

제출방법

사업장정보 및 IoT 연결완료



* 23. 07. 01 부터는 제출 방법이 자동 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.

자주 묻는 질문 (FAQ)

Q 신규 4종 및 5종 사업장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?

-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」 개정(2022.5.3.) 이후,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30조(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)에 따라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을 완료하여 가동개시 신고를 한 4종 및 5종 사업장
- 신규 4종 사업장은 2023년 6월 30일까지, 신규 5종 사업장은 2024년 6월 30일까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함
- ※ 의무기한 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대상 시설은 신규 가동개시 신고를 한 배출(방지)시설 및 해당 시설의 배출구와 연결된 모든 배출(방지)시설

Q 사물인터넷(IoT) 설치를 진행하려면 어떤 업체를 선정해야 하나요?

IoT 관리시스템 (www.greenlink.or.kr) ▶ 상단 [IoT] ▶ 업체소개 ▶ IoT 설치업체 리스트를 참고하여 선정하시기 바랍니다.

Q 하나의 방지시설에 복수의 배출시설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 모든 배출시설에 전류계를 설치해야 하나요?

- 배출 및 방지시설의 가동 여부 확인을 위한 것으로 모든 배출시설에 전류계를 부착하여야 함
- 단, 1개의 방지시설에 연결된 복수의 배출시설이 동일한 공정인 경우, 배출시설의 통합전원에 전류계를 부착할 수 있음
- 한편, 복수의 배출시설이 직렬형의 연속공정으로만 운영이 가능한 경우, 배출시설의 통합전원에 전류계를 부착할 수 있음(연속공정상의 배출시설이 개별 운영 가능한 경우는 제외)
- ※(참고) 「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」

Q 1종~3종 사업장 중 배출구가 4종 및 5종인 경우,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부착대상에 해당되는지?

-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은 4종 및 5종 사업장으로 1종~3종사업장의 경우는 부착 대상이 아님
- 1종~3종 사업장 중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국고보조금 업무처리 지침(2023.1)에 따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함.

Q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 서류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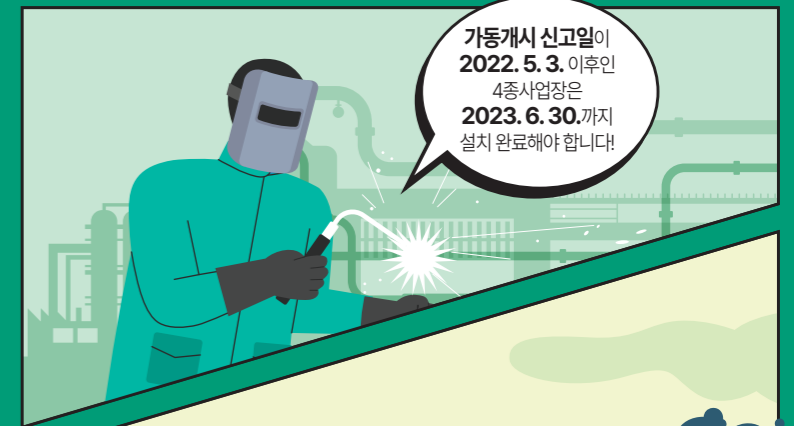
「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 운영규정」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



소규모대기배출시설관리시스템(GreenLink) 안내

안내전화 1533-3301 팩스 032-590-4025
홈페이지 www.greenlink.or.kr

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



소규모 방지시설 및 IoT 설치비용
90% 지원

Green Link



Green Link란?

IoT기술을 활용하여 방지시설 상태정보신호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대기배출시설의 관리를 목적으로 구축된 시스템

소규모 사업장 IoT 측정기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

왜 설치해야 하나요?



소규모 사업장 IoT 측정기기 설치 의무화

2022년 5월 3일에 개정된 「대기환경보전법, 제32조 제1항, 「대기환경 보전법 시행령, 제 17조 및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, 제37조, 제37조의 3에 따라 사업장은 IoT 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하고 그린링크로 측정결과가 정상적으로 전송되도록 해야합니다.

설치기한

가동개시 신고일이 2022년 5월 3일 이전이면 **기존 사업장**, 이후이면 **신규 사업장**으로 분류되어 설치 기한이 적용됩니다.



설치대상

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[별표 1의3], 사업장 분류기준에 따른 **4종 사업장, 5종 사업장**이 대상입니다.

부착대상 방지시설	부착대상 사물인터넷 측정기기	
	배출시설	방지시설
원심력집진시설	전류계	전류계
세정집진시설		전류계
여과집진시설		전류계, 차압계, 온도계
전기집진시설		전류계
흡수에 의한 시설		전류계, pH계
흡착에 의한 시설		전류계, 차압계, 온도계

* 부착대상 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방지시설 및 이와 연결된 배출시설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각각 부착하여야 함

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요?



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

지원 대상

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,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
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, 제13조에 따른 **4·5종 사업장**
*예산 여건에 따라 1~3종 중 중소기업 지원 가능

지원 제외 대상

-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
-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
- 5년 이내 정부(중앙, 지방)로부터 예산 지원 받은 방지시설 불가

지원조건

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3년간 운영하고 **측정자료를 그린링크로 전송**하여야 함

지원금액

- 사업예산 내에서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(IoT) **설치비용의 90%** 지원
- 국비50%, 지방비 40%, 자부담 10%

지원절차



어떻게 운영 하나요?



GreenLink 가입

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 GreenLink란?

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(GreenLink, 그린링크)은 IoT 기술을 활용하여 방지시설 상태정보 신호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대기배출시설의 관리를 목적으로 구축된 시스템입니다.

간단 가입 매뉴얼



- 1 그린링크 가입 (회원가입 승인 및 사업장 정보입력)**
 - 1 www.greenlink.or.kr 홈페이지 접속, 오른쪽 상단의 '회원가입' 클릭
 - 2 휴대폰 본인인증 후 회원가입 필수양식 작성
*사업자등록증, 공단양식 재직확인서 첨부
*로그인 시 SMS 인증을 위해 시설관리 담당자가 직접 가입
 - 3 담당자가 가입 정보, 첨부서류 확인 후 회원가입 승인
*가입 승인 후 시스템 사용 가능, 반려 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정보 수정
*가입 승인 소요시간 1~2일 소요
- 2 측정기기 설치**
 - 1 홈페이지에서 [운영시스템] 클릭 (좌측 상단, 빨간색 톨니바퀴)
 - 2 [사업장 관리] - [기초정보관리] 클릭
 - 3 [사업장정보관리], [배출구정보관리], [시설정보관리], [시설관계관리] 작성
- 3 신호전송**
 - 1 생성된 사업장코드 및 시설코드를 기반으로 IoT 업체가 방문 또는 원격 명령을 통해 Gateway IP 설정
 - 2 Gateway가 그린링크에 연결되면, 시스템으로 IoT 측정기기 신호값이 전송됨
*시스템 최초 연동 시 제출 서류: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완료 신고서, 그린링크 전송확인서